

○ 의안제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1992년 4월 9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안전의식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 영등포구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 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준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
- 교통관련 공무원 및 교통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의결 기구로서 매 분기별 회의 정례화.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3. 제정근거

-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서울시 교기 33020-569('92. 3. 25)호로 시달된 자치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계획에 의거 자치구 조례제정.

4. 예산조치

- '92년도 추경 예산반영 예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2. 지역교통과장
3. 도시정비과장
4. 건설관리과장
5. 토목과장
6.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7.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6 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이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 7 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